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1년 6월 9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
국토해양부장 권도엽

●대통령령 제 22970호

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담비율”을 “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, 소요비용의 부담비율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7.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

제1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

- 가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- 나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
- 다.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라.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,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.

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임대차 계약기간

제26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제7호 본문 중 “임대차기간”을 각각 “임대차 계약기간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임대주택의 경우: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

제3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,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의2제1항제5호 중 “임대차기간”을 “임대차 계약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 각 호의 사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”으로, “교부하고”를 “내주고”로, “이를 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하여야”로 한다.

-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
2. 임대사업자의 국세·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권한의 위임)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주택 전대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

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임대주택법」이 개정(법률 제10463호, 2011. 3. 9. 공포, 6. 1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세종시 등으로의 이전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기준을 완화하며,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(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)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이전시기 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의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되,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고,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함.

나. 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개선(안 제30조)

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, 그 적립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, 적립금액 등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.

다.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대상 및 절차 규정(안 제30조의2)

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도록 함.

라. 가산금리 부과권한의 시·도지사로의 위임(안 제35조의2 신설)

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권한은 행정집행적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함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1년 6월 9일

국무총리 김 황 식

국무위원
교육과학기술부
장관 이 주 호

●**대통령령 제22971호**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권한의 위임)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
2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
3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
4. 법 제45조에 따른 정관변경인가 및 보고
5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
6.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(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